

■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일정

신청대상자	신청일자	장소	신청방법
다자녀가구 특별공급대상자	2021년 5월 12일(수)	인터넷 청약 (08:00 ~ 17:30)	•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① PC : www.applyhome.co.kr ② 스마트폰 앱

-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,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,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,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

구분	당첨자 발표	당첨자 서류제출 기간	계약 기간
일정	2021년 5월 24(월)	2021년 5월 26일(수) ~ 6월 2일(수)	2021년 6월 4일(금) ~ 6월 7일(월)
방법	개별조회 (청약 Home 로그인 후 개별조회)	방문 접수 (10:00 ~ 16:00)	
장소	한국부동산원 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 '청약홈' www.applyhome.co.kr	당사 견본주택 (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-5 번지)	

■ 주택형별 대상 세대

구분	75	84A	84B	합계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19	15	5	39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

청약 통장	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			
	구분	창원시 및 경상남도	부산광역시	울산광역시
	전용85㎡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
신청자격	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(창원시) 및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.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함.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. •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. •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. •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지역(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"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"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함. •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함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)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			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

평 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① 미성년 자녀수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② 영유아 자녀수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
③ 세대구성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④ 무주택기간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)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⑤ 해당 시·도 거주기간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⑥ 입주자 거주가입기간	5	10년 이상	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※ 청약홈 → 청약 자격확인 →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
계	100			

①, ②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

③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
③, ④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
④, ⑤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
⑥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

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

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